

2 宅地所有上限에 관한 法律施行規則中 改正令

建設部令 第480號. 1991年 4月 11日

택지소유상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주거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택지를 취득하는 경우를 말한다.

제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4조의2(택지취득허가기준) 영 제10조

부 칙

제14호에서 “건설부령이 정하는 목적을 위하여 택지를 취득하는 경우”라 함은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관 소속직원의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◀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▶

현행 택지취득허가기준에 관한 규정에는 주한외국대사관 직원 등의 주거용으로 택지를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에 시장·군수·구청장이 허가를 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, 택지를 취득할 수 없게 됨으로써 외교문제가 제기될 우려가 있으므로,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관 소속직원의 주거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택지를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허가를 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.

〈건설부 제공〉